



강릉유천 6, 7, 8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공고일 : 2021.04.23(금)]

- 공급위치 : 강릉시 선수촌로 10, 미디어촌6단지 [A-2BL]
강릉시 선수촌로 36, 미디어촌7단지 [B-1BL]
강릉시 선수촌로 113, 선수촌8단지 [B-2BL]
- 공급대상 : 미디어촌6단지 A-2BL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280세대 중 **예비입주자 85세대**
미디어촌7단지 B-1BL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363세대 중 **예비입주자 72세대**
선수촌8단지 B-2BL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총 200세대 중 **예비입주자 66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강릉유천 A-2BL : 2015.10.12, 강릉유천 B-1BL : 2016.07.04, 강릉유천 B-2BL : 2017.05.31] 이후 발생한 **공가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4.2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에 참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사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수점이하 절사)의 주택형으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려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계약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되어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안내

구분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문의처
일시	2021.05.10(월) 10:00 ~ 05.11(화) 17:00	2021.05.13(목) 17:00 이후	2021.05.14(금) ~ 05.18(화)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 제외) 등기우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통보) 	LH 대표전화 1600-1004
장소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현장접수 불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5551)강릉시 울곡로 2846, PEYTO 2층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 담당자 앞 * 신청단지 및 접수번호 표기 필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21.04.23)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1.05.13(목)에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공개세대 만큼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향후 공개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방법·공급일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되 **분양권등은 유주택으로 적용되며(II.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강릉유천 미디어촌6단지 [A-2BL]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80세대 중 예비입주자 85세대

단지명	주택형	신청형	세대별 주택면적(m ²)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m ²)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기존 예비자 수	공가 호수	모집 호수 (85)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미디어촌6 [A-2BL]	59.7800D (59AH)	59	59.78	25.6482	85.4282	3.7493	23.5283	112.7058	50	18	71	6	4	85
	59.9800D (59AS)		59.98	25.7340	85.7140	3.7619	23.6070	113.0829	50	25	128			
	59.8500B (59BH)		59.85	25.6782	85.5282	3.7537	23.5559	112.8378	50	18	35			
	59.9800B (59BS)		59.98	25.7340	85.7140	3.7619	23.6070	113.0829	50	25	46			

■ 강릉유천 미디어촌7단지 [B-1BL]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63세대 중 예비입주자 72세대

단지명	주택형	신청형	세대별 주택면적(m ²)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m ²)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기존 예비자 수	공가 호수	모집 호수 (72)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미디어촌7 [B-1BL]	74.7900A	74	74.97	23.7004	98.6704	5.6445	23.5855	127.9004	58	21	72	45	0	35
	74.9700B									19	104			
	84.7800A	84	84.78	26.8017	111.5817	6.3830	26.6717	144.6364	65	17	34	29	1	37
	84.7800B									22	153			

■ 강릉유천 선수촌8단지 [B-2BL]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중 예비입주자 66세대

단지명	주택형	신청형	세대별 주택면적(m ²)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m ²)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기존 예비자 수	공가 호수	모집 호수 (66)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선수촌8 [B-2BL]	74.8800B	74	74.88	25.3026	100.1826	3.8683	31.9777	136.0286	58	25	200	1	6	66

※ 청약신청은 단지내 신청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예시 : 미디어촌6단지 : 59형 / 미디어촌7단지 74형, 84형 / 선수촌8단지 : 74형)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수점이하 절사)의 주택형으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모집에 참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사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인터넷 공고시 첨부된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미디어촌6단지[A-2BL]

[단위: 원]

단지명	주택형	신청형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미디어촌 6단지 [A-2BL]	59.7800D	59	34,000,000	6,800,000	27,200,000	450,000	(+) 64,000,000	98,000,000	183,330
	59.9800D						(-) 22,000,000	12,000,000	495,830
	59.8500B								
	59.9800B								

- 미디어촌7단지[B-1BL]

[단위: 원]

단지명	주택형	타입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미디어촌 7단지 [B-1BL]	74.9700A	74	36,494,000	7,100,000	29,394,000	514,000	(+) 74,000,000	110,494,000	205,660
	74.9700B						(-) 23,000,000	13,494,000	561,910
	84.7800A	84	46,260,000	9,000,000	37,260,000	580,820	(+) 83,000,000	129,260,000	234,980
	84.7800B						(-) 30,000,000	16,260,000	643,320

- 선수촌8단지[B-2BL]

[단위: 원]

단지명	주택형	타입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선수촌 8단지 [B-2BL]	74.8800B	74	40,000,000	8,000,000	32,000,000	600,000	(+) 86,000,000	126,000,000	241,660
							(-) 24,000,000	16,000,000	650,00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동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단지명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미디어촌6 [A-2BL]	59.7800D (59AH)	124,734	19,429	105,305
	59.9800D (59AS)	126,898	19,494	107,404
	59.8500B (59BH)	125,292	19,451	105,841
	59.9800B (59BS)	127,314	19,494	107,820
미디어촌7 [B-1BL]	74.9700A	146,030	22,468	123,562
	74.9700B	146,381	22,468	123,913
	84.7800A	165,291	25,408	139,883
	84.7800B	165,009	25,408	139,601
선수촌8 [B-2BL]	74.8800B	156,877	22,596	134,281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미디어촌6단지 : 세대당 5,500만원, 미디어촌7단지(74/84형) : 세대당 7,500만원, 선수촌8단지 : 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 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II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
-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숫점이하 절사)의 주택형으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정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예 1)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74형으로 신청불가
예 2)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84형 신청가능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적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일

- 주택의 경우(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나. 분양권 등의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III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등 안내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문의처
일시	2021.05.10(월) 10:00 ~ 05.11(화) 17:00	2021.05.13(목) 17:00 이후	2021.05.14(금) ~ 05.18(화)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 제외) 등기우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통보) 	LH 대표전화 1600-1004
장소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 현장접수 불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5551)강릉시 울곡로 2846, PEYTO 2층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 담당자 앞 * 신청단지 및 접수번호 표기 필수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1.05.13(목)'에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을 우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등호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추첨된 등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 향후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PC·모바일 신청, 현장접수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신청(임대주택 청약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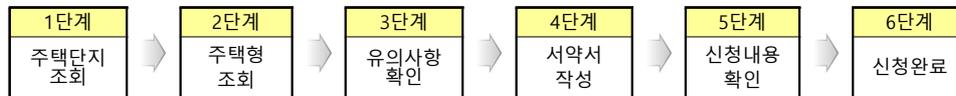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오른쪽 상단)공동인증서 로그인 → (중간)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무주택기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6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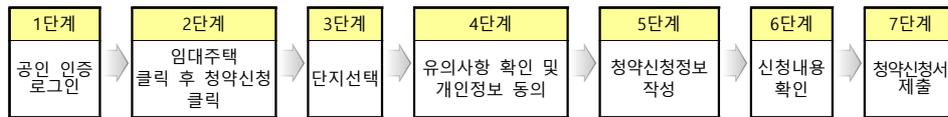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 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신청형태는 **추후 다른 주택형태로 변경 불가**)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숫점이하 절사)의 주택형태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예 1)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74형으로 신청불가
 - 예 2)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84형 신청가능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은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23)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1] • 대상자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또는 도장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체크필수 : 각 항목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안내를 받았습니 다 <input type="checkbox"/> 이해 하였습니다에 체크필수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본인 준비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양식첨부
해당자 추가 사항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상세로 발급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분리배우자)	주민센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1.05.14~2021.05.1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2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대리인 서류제출시 추가 구비서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양식 첨부),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4.23)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와 세대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해제)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숫점이하 절사)의 주택형으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예 1)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74형으로 신청불가
 - 예 2) 미디어촌7단지 74A형의 기 계약자는 금회 84형 신청가능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등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강릉유천 A-2BL : 2015.10.12, 강릉유천 B-1BL : 2016.07.04, 강릉유천 B-2BL : 2017.05.31**]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임대주택의 임대정보 → 공공임대 → 게시일(단지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력) → 지역(강원도) → 상태(접수마감) → 검색 클릭

내 강릉권주거복지지사 위치 안내



■ 문의전화 : ☎ 1600-1004(LH 콜센터)

■ 위치안내 :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6,
PEYTO 2층
(신청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방문접수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강릉유천 A-2BL : 2015.10.12](#), [강릉유천 B-1BL : 2016.07.04](#), [강릉유천 B-2BL : 2017.05.31](#)]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안내에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또는 공사 대표전화(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1. 04.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